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
일부개정법률안  
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4907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4.

발 의 자 : 김교홍 · 허종식 · 이훈기  
이용우 · 장철민 · 이재관  
모경종 · 정일영 · 정진욱  
배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상제작산업은 경제적·문화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. 미국,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제작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수의 국내·외 영상제작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,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설).



##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영상제작에 대한 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(이하 “영상제작기업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화, 드라마 등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에 영상제작의 국내·외 파급효과, 고용창출 규모, 기술·노하우 이전효과, 입지 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영상제작 기업에게 노무비,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영상제작기업, 지원금 사용용도, 지원한도 및 산정방법, 지원신청 및 심사절차, 영상제작기업과의 지원금 협상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·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2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3. 법령, 지원결정 또는 지원계약을 위반한 경우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16조의2(영상제작에 대한 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(이하 “영상제작기업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화, 드라마 등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에 영상제작의 국내 · 외 파급효과, 고용창출 규모, 기술 · 노하우 이전효과, 입지 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영상제작기업에게 노무비,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영상제작기업, 지원금 사용용도, 지원한도 및 산정방법, 지원신청 및 심사절차, 영상제작기업과의 지원금 협상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|

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·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2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  
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  
우

3. 법령, 지원결정 또는 지원계  
약을 위반한 경우
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  
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  
하는 경우